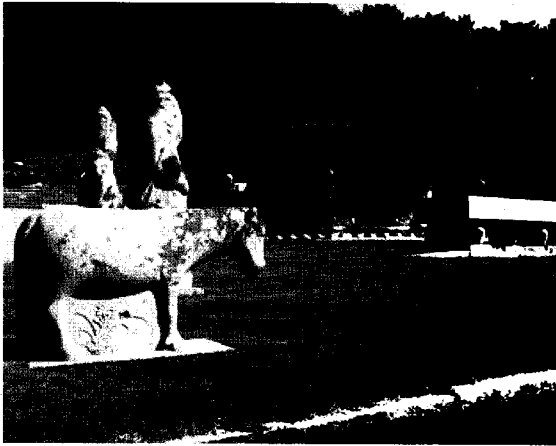


茶山의 명판결과 조선의 법 풍속(13)

미치광이 처벌



▶▶ 사도세자의 모

조선후기에 황해도 풍천의 백성 오재묵이라는 자가 동네의 다섯 살 먹는 여자아이 윤덕을 칼로 찔러 살해한 일이 벌어졌다. 조사를 맡은 사또는 오재묵을 정신병자로 규정했다. 유족이나 증인들이 모두 오재묵의 미친 행동을 진술하였고 범인의 진술과 표정을 살펴보니 눈동자가 번뜩이고 말이 두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또는 오재묵이 미치광이가 분명하지만 세상의 일이 변화가 끝이 없고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미쳐서 난폭해졌다는 말로 가볍게 살인 사건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엄중한 형벌로 재차 범인을 신문하고 연루된 관련자들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기 어려운 조카나 숙부 등을 제외하고 주변의 이웃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였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칼을 불에 달군 후 식초를 부어 혈흔이 분명하게 나타나자 이를 상부관청에 보고하면서 최종적으로 미쳐서 살인한 경우로 결론지었다. 후일 이 사건에 대해 다산은 진정 미치광이가 벌인 일이 분명하며 사또의 조사가 훌륭하다고 칭송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다산은 조선후기에 미치광이를 감형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 미친 척하고 처벌을 피하는 자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다산은 타고난 광증이 아니라면 마땅히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진짜 미치광이와 미친 척하는 가짜를 구별하는 일이었다. 다산은 '주례'에 사면대상을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였는 바 이 가운데 '용우'는 '타고난 바보천치'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리석거나 미치광이로 용서받을 경우 선천적으로 바보이거나 실성하여 전연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만 해당되었다.

또한 '속대전'에 규정된 '미쳐 실성하여 살인한 경우 사형을 감하여 징배한다'는 조문을 해석하면서 미쳤다는 의미는 타고난 바보이거나 선천적인 어리석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대명률'의 '폐질자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배형 이하라면 속전을 바치도록 하고, 살인죄로 사형에 처할 경우 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는다'는 조항의 '폐질'은 정신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귀머거리나 장님 등을 말한다고 해석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정신이상이나 지체가 확실하다면 감형할 수 있지만 가짜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게 다산의 굳은 생각이었다.

너무나 패악한 광인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가령 선천적인 미치광이가 분명하여 감형이 마땅한데 너무도 성품이 패악하여 계속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유배를 보낼



글 김 호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kimho@ginue.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조선의 명의를', '조선과학인을 열전' 등이 있다.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에 처하는 게 나은가? 경기도 금천의 백성 이시동이 배어둔을 몽둥이로 구타 살해한 사건에서 다산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시 초검과 복검관은 이시동을 '타고난 미치광이'로 보고하였고 황해도 관찰사는 재조사를 명했다. 혹여 미친 척하여 죄를 면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추궁하려던 것이었다. "광병이 때 없이 발작한다는 유족의 진술이나 여러 사람의 증언이 공인된 듯하며, 초검과 재검의 진술 역시 하나도 어긋남이 없지만, 혹시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겠는가. 법이 지엄하기를 모호하여 분별되지 않는 진술로 인해 미치광이로 결론지을 수 없다. 사또들은 함께 형장을 갖추고 날짜를 약속하여 조사하되 엄형으로 범행 사실을 밝혀도록 하라." 황해감사의 명령에서도 당시 거짓으로 미친 척하면서 살인죄를 피해보려는 범인들이 상당수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산은 "미침에도 여러 등급이 있어 귀신이 씩씩 실성한 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본래 지닌 성품이 패악하여 방자하고 사나워 하늘과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채 미치광이로 자처하며 기분대로 악한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종류는 분명히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는 '속대전'을 인용하여 가볍게 처벌해도 좋지만, 후자는 용서할 수 없으니 백성을 위해 해로움을 없애는 것이 옳다. 지금 이시동이란 자는 백성을 위해 해로움을 없애는 것일진대 문서 전체를 보지 못해 뭐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산은 스스로 미치광이로 행동하면서 패악을 부리는 경우 백성을 위해 해로움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사도세자의 광증, 죽을 일이었는가?

조선후기 정쟁의 갈등 속에서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다. 아버지(영조)가 아들(사도세자)을 죽이고 다시 죽은 아버지를 신원하려는 아들(정조)의 노력은 조선 후기 정치사의 핵심적 문제였다. 다산이 직접적으로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견해를 밝힌 바는 없다. 다만 광증에 대한 앞서의 해석을 통해 유추할 뿐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도세자의 처벌이 광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영조를 시해하려는 역모 때문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두 가지 범죄 여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사도세자의

광증이 확실하다면 사죄에 처하지 않고 감형하는 게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법 감정이었다. 영조대 '속대전'에 광인을 감형하는 조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쳐서(혹은 미친 척하며) 아버지를 죽이려 한 음모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도세자 사건의 판단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서 갈라진다. 첫 번째 해석은 사도세자가 미친 것이 분명하며 일부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혜경궁 홍씨와 정조가 이러한 입장이었다. 이들은 남편과 아버지 사도세자가 광증이었다는 사실을 영조가 인정하였다면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았다. 반면에 두 번째 해석은 사도세자가 미쳤는지 몰라도 부왕을 살해하려는 생각이 있었으므로 사죄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조와 노론 벽파들 일부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였다. 판단의 핵심은 첫째, 부왕을 죽이려는 의도의 유무이다. 의도가 없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시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조와 혜경궁은 설사 시해의도가 있었다 해도 '광증' 때문이므로 용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론 벽파의 신료들은 생각이 달랐다. 사도세자의 광증을 진짜로 여기지 않았고(진짜라 해도) 그렇기에 용서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영조의 판단은 무엇일까? 사실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하겠는가? 설사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이에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유배형에 처한 후 유배 중인 죄수가 반성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힌 채 죽고 말았다. 영조의 후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후 정치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광증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때문에 사죄에 처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고, 노론 벽파들이 사도세자를 음해하여 영조로 하여금 자식을 죽이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왕위에 오른 정조가 이들 노론 벽파 일부를 주륙했음은 당연하다. 다산 또한 이러한 정조의 결정에 찬성한 듯 보인다. 다산과 정조 모두 진정한 광증은 감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도세자는 원래부터 극악 무도한 정신병자도 아니었다. 때문에 정조는 사도세자를 용서치 않은 영조의 판단이 지나쳤다고 판단하고 이를 부추긴 신료들을 과감히 숙정했다. 그리고 다산은 이러한 정조의 결정을 묵묵히 따랐을 것이다. **ST**